

중돈 검역 절차 및 방법



김 옥 경 소장
(국립동물검역소)

1. 서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여건을 10년전의 '85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교역국가수는 32개국→79개국(247% 증가)으로 다변화되었으며, 검역품목수는 99품목→259품목(262% 증가)으로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역물량 측면에서도 15,691건→46,390건(296% 증가)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95. 1. 1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제조치 협정문(SPS)의 발효에 따른 국내의 검역여건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련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동물검역소에서는 이러한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시설 및 장비보강, 검역기술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총 투자계획 108억원을 목표로한 1단계 검역발전대책('92~'96)을 WTO 출범등 검역기능강화의 시급성을 감안 1년 단축하여 '95년도에 성공적으로(102억원 투자) 완수한 바 있으며, 완전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검역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211억원을 투자목표로 2단계 검역발전대책('96~'98)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동안 중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6,000두가 수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양돈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가능성 우려로 검역의 철저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돈 수입 검역절차 및 방법을 지면으로나마 자세히 알려드리고 소개하고자 한다.

2. 돼지 수입 허용지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의하여 구제역, 아프리카 돈콜레라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부터 돼지등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한하여 돼지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돼지수입허용국가 : 미국(미국 본토, 하와이, 푸에르토리코에 한함), 캐나다, 영국, 애란, 스웨덴, 덴마크, 일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남위 22도 이남 지역에 한함) 및 핀란드

3. 돼지 수입위생조건 현황

돼지 수입허용국가(11개국)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가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가·지역 및 농장의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부여, 예방접종 금지사항, 수출전 최소 격리검사기간 부여, 개체별 정밀검사 질병 및 방법과 그 결과, 소독에 관한 사항, 수송중 수입금지지역 경유 금지, 수출국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의 주기적인 한국정부에 통보의무, 수입위생조건 제반사항 준수에 대한 증명서 발행요건 등을 정하여 수출국가에서부터 수출검역이 철저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4.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첨부 돼지를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발생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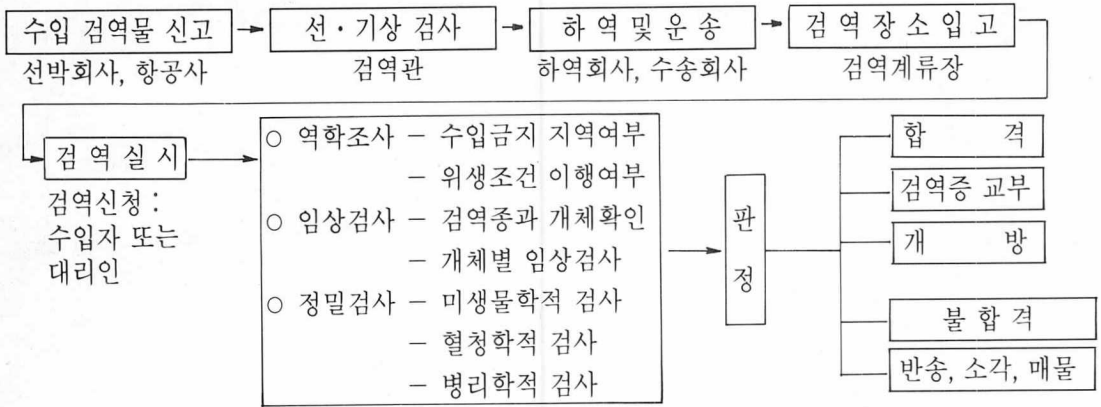
- 검역증명서는 원본(부분포함)이어야 한다(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검역증명서 기재사항은 선명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 검역증명서가 국제통용어인 영문기재 이외의 자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검역증명서 내용은 상대국에 제시한 위생조건에 적합하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조건에 없는 사항은 상대국의 규정에 의한다.

5. 검역장소 및 기간 수입돼지는 수입공항 및 항구의 동물검역소 측사에 별도 격리 수용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15일간의 전염병 감염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게됩니다.

6. 돼지수입의 사전신고 돼지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기 전에 수입예정 공·항만 관할 소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신고하여 검역계류장 사용지정을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하다.

7. 검역절차 및 방법

수입돼지는 다음과 같은 검역절차에 따라 검역을 받게 된다.



가. 수입 검역물(돼지) 신고

수입돼지를 선적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관할소장에게 제출하여 돼지가 수입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선·기상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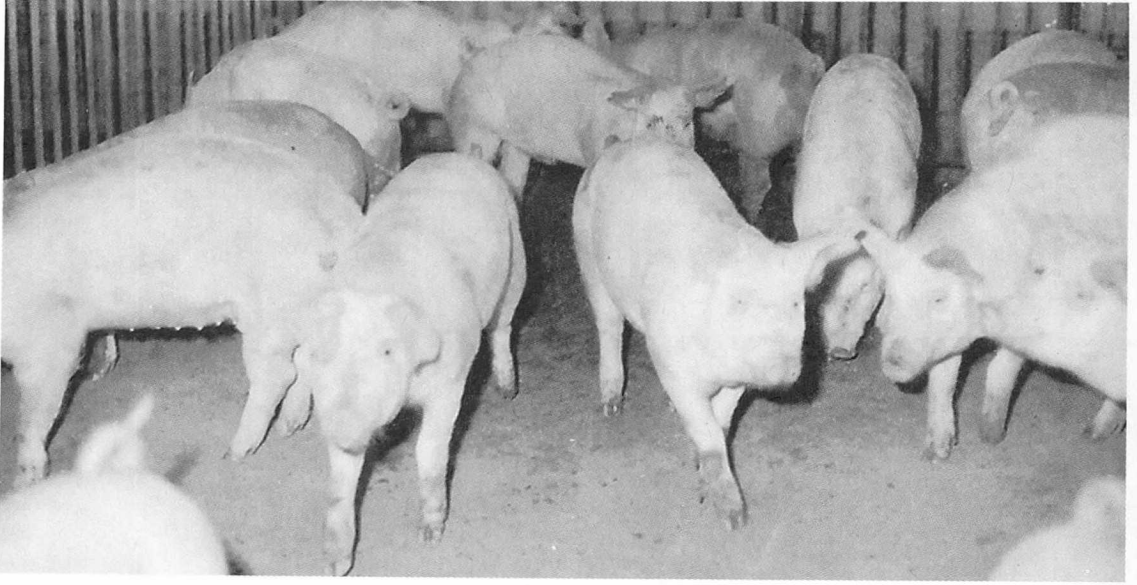
수입돼지 신고를 받은 검역관은 선·기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하고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선·기상 검사 결과 수입금지지역산 또는 수입금지지역 경유, 가축전염병 이환축등으로 불합격될 경우 하역을 금지시키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령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소각 또는 매물조치하도록 하여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다. 하역 및 운송

선·기상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관의 감독하에 검역물 운송 전용차량이나 승인된 차량으로 수송되어 동물 검역계류장에 격리 수용하여 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라. 검역장소 입고

수입돼지가 동물검역계류장에 격리 수용되면 관계자 이외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및 관련도구에 대하여도 철저한 소독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검역과정중 가축전염병 양성축 발생시에는 별도 격리 조치하여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 검역실시

수입돼지가 동물 검역계류장에 입고되고 수입자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1) 역학조사

수입돼지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여부와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수입위생조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 임상검사

수입돼지 전두수는 돼지로 전파가능한 모든 가축전염병 감염여부에 대하여 검역기간 동안 매일 검역관의 임상검사를 받게 된다.

3) 정밀검사

수입돼지 전두수의 개체별 정밀검사 시료(혈청)를 채취하여 부루세라병, 오제스키병,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염(발생지역산에 한함)에 대하여는 실험실에서 간접 면역 형광항체법 등 최신 진단기술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감염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바. 판정

수입돼지의 검역절차에 따라 국내 도착시 선·기상 검사에서부터 정밀검사결과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하여 수입동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통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 검역계류장에서 가축전염병 이환축 발생시 동거한 돼지에 대하여는 검역기간 연장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하여 개방하고, 양성축에 대하여는 반송이나 소각·매몰을 조치하여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